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. 12. 14 선고 2022가단1083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문

변 론 종 결 2022. 11. 9.

판 결 선 고 2022. 12. 1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.)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. 11. 5.경 체결된 매매계약을 23,150,091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3,150,091원 및 위 돈 중 16,400,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의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,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, 이는 C의 사행행위이고,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되므로,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23,150,0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설령 C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불과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.

다. 판단

원고의 채무자인 C이 2018. 11. 5.경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C의 사해행위 당시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,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.

다만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데, 갑 제5호증,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증인 C,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① 피고와 C이 가까운 친척관계가 아니어서 피고가 C의 자력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피고가 C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의 자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이 사실상 유일한데, 위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, 사해행위 기준일인 2018. 11. 5.경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을구 순위번호 5번(채권최고액 3,000만 원)의 근저당권만 존재하고 있고 별다른 가압류등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, ③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은 C이 스스로 고지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,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고지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, 설령 피고가 C에게 이

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를 악의라고 볼 수는 없는 점, ④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,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, 위 금액은 매매계약 당시 시가에 거의 근접하는 금액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시가에 근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위험을 부담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, ⑤ 피고가 C에게 매매대금 5,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, 피고가 C의 지시로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단축급부로서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위 거래내역이 허위 또는 꾸며진 거래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, ⑥ 매매계약일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가 근접해 있으나,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형식의 거래가 상식에 어긋나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, ⑦ 증인 C, D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증언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제해성

별지

부동산 목록

1. 토지외 표시

경상남도 밀양시

대 96㎡

